

중 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여비의지급) 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일비 지급 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일비 지급 범위
시·도의회의원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50,000원 이내

【별표 5, 별표 6 생략】

현 행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95.7.1)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기준) ①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별표 6, 별표 7 생략】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95.8.7.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마포구 성산2동 200-69
성명: 강수환 외 3,068인

나. 소개의원: 김유현 의원, 윤명규 의원, 한수균 의원

다. 접수일자: '95.8.4.

라. 회부일자: '95.8.4.

마. 상정일자: 제32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5.8.7.)상정, 질의토론, 채택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성산2동 45,000여명의 주민이 17년간 운행하던 진화운수 33번은 대중교통으로서 신촌까지 많은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운행노선을 7월1일부터 대체노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시킴으로써 주민들은 서울시운수행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135-1 유성운수현노선 연장을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과, 진

화운수 824번은 홍대 전철역까지 연계수송하는 노선으로 왕복 6km인바 마을버스 운행에도 못미치는 거리로써 34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마을버스 요금으로 조정하고 신촌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임.

3. 취지설명의 요지(대표소개의원 김유현 의원)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95.6.20일자로 서울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1-2개 구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운행노선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현 824번 시내버스를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여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등 3개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4만5천여 성산2동 주민의 과도한 교통요금 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교통행정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접수 심사하게 된 본 청원의 내용은 33번 진화운수 노선이 대체노선도 없이 폐지되었으며, 135-1 유성운수는 성산2동을 통과하면서도 노선연장이 안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며, 현재 운행중인 824번 진화운수를 마을버스로 변경하고 신촌권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학생들의 통학은 물론 주민편익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33번 진화운수 노선정비는 주민편의를 고려치 않은 사업자 편의의 조치라고 사료되며, 135-1 유성운수가 성산2동을 통과하면서도 성산2동 주민이 승차할 수 없도록한 것은 주민편의를 우선해야 할 공익사업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합리적인 운행노선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824번 진화운수를 마을버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현사업자간의 동의등 제반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주민편익증진과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을 위해서도 824번 버스노선 연장등 청원인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근거리노선운행을 하며 버스요금을 징수하는데 마을버스로의 전환은 안되는 것인가?
- 답변요지(유병식 교통행정과장) : 현사업자와 협의하여 마을버스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유성운수가 성산동을 왜 건너뛰어 운행하는가?
- 답변요지(유병식 교통행정과장) : 유성운수가 평창동 차고지가 없어지면서 상암동에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임시박차허가를 받았을 뿐이며 노선연장을 받은 것이 아니다.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서울시 버스회사 중 60%가 차고지가 없는데 차고지인가가 없어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은가?
- 답변요지(유병식 교통행정과장) : 차고지인가가 노선연장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 질의요지(유용봉 위원) : 현재의 버스운행 허가시 마포구청에서 버스요금의 부당함 등 문제점을 미리 제기치 못하였는가? 민원이 있을 줄 몰랐느냐?
- 답변요지(유병식 교통행정과장) : 허가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마을버스형태의 단거리노선을 서울시에서 버스운행허가를 내주었다.

6. 토론요지

권오범 위원장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의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청원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시간 필요성 강조

9. 심사결과 의견 : 별첨

10. 기타사항

○ 현장답사

· 일시 : '95.8.7. 16 : 00 ~ 17 : 40

· 내용 : 상암동 135-1 버스박차지에서 진화운수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마을버스 운행 노선일부를 돌아봄.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노선변경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 본 청원은 성산2동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33번 진화운수 시내버스가

1995년 7월 1일 장거리 운행 노선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대체노선도 없이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운행중인 135-1 유성운수 시내버스는 상암동 임시차고에서 성산2동을 통과하면서도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운행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과

- 현재 성산2동에서 홍대입구까지 운행중인 824번 진화운수 시내버스는 지하철 연계 수송노선으로 실제적으로는 마을버스의 역할을 하면서도 승차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340원을 받고 있어 이를 마을버스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행구간을 신촌권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 동지역 여건등을 도시전설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거리 운행노선을 점차 정비하려는 서울시 교통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해야 할 교통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현재 135-1 유성운수 시내버스가 성산2동을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 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관계 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본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 또한 824번 진화운수 시내버스는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대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촌권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운송 사업자와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